

본향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기본방침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등의 지정)

제6조 CCTV 설치

제7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 CCTV 사용 제한

제10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제11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제12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제13조 화상정보 보호 조치

제14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제15조 장비관리

제16조 사무의 위탁

제17조 비밀유지의무

제18조 준용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개정이력

제정 2023. 12. 10.

개정 2024. 4.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규정을 구체화하여 본향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시설외부에서 영상정보를 열람·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임
-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중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 ⑤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⑥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
- 1. CCTV 미설치·미관리 동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가 부재이거나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법정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 순으로 한다.
- ⑦ "모니터링"이란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모니터를 통해 수급자의 상황을 관찰하여 상태나 변화 등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한다.
- ⑧ "해상도"란 디스플레이 모니터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소(픽셀)의 숫자로'가로 방향의 화소 수'와 '세로 방향의 화소 수'를 곱한 값으로 나타냄
- ⑨ "화소"란 출력용 디스플레이 기기상 표현되는 색이 있는 점의 집합 중 각각의 점으로 픽셀(Pixel)과 동의어

제3조 적용범위

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방침

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등의 지정)

- ① 시설장은 CCTV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 ②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이하"담당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사항은 별도의 지정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1. 사회복지사
 - 2. 간호조무사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2.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제2항에 따른 담당자는 관리책임자로부터 CCTV의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는 수급자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 내에서 모니터 또는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하여 영상자료를 열람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제6조 CCTV 설치

①시설의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거실 6대
2. 복도 3대
3. 침실 15대(침실 각 1대)
4. 현관(외부출입) 1대
5. 물리(작업)치료실 1대
6. 프로그램실 1대
7. 식당 1대
8. 엘리베이터 1대
9. 외부공간 3대

②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4층 EPS실 및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제6조1항에 따라 설치된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안내판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안내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촬영 시간·설치 장소(촬영 범위)
2.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③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 범위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1. 시설 출입구 및 주변 경계부(담장)
2. 시설 내 안내 게시판

④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설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여 설치한다.

제8조 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①시설에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성능: HD급(130만 화소 이상)
2. CCTV 촬영: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6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 CCTV 사용 제한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0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수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하는 자 및 시설은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관리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열람요청에 거부할 수 있다.

1.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 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 화재 등으로 영상이 소실 • 훼손된 경우
3. 시설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열람 요청하는 경우
4. 보호자가 입소자의 단순 안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⑤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관리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1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 • 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 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관리책임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로 제한한다.

제14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①관리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2.>

1. 개인정보배움터( 개인정보배움터)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3. 교육 클릭
4. 온라인교육(개인수강)
5. 일반인 교육과정 > 교육 선택하여 신청 및 수강

③이수증은 2년간 유효하다.

제15조 장비관리

- ①관리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②관리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 ①관리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3. 5. 8. 공포, 6. 22. 시행)에 따라 2023. 12. 21.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력

	≡ 개정일자	≡ 주요 개정내용
1	2024. 4. 22.	교육 서비스가 개인정보 포털에서 개인정보 배움터로 이관됨을 반영함.
2		